# GG 달라지는 금연정책

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시행 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-

## 1. 전체금연구역(건물·대지포함)

-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, 병·의원 및 부속 장례식장, 보건기관 (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)의 부지와 건물
- 청소년활동시설(청소년수련관·청소년문화시설·청소년특화시설·청소년야영장·유스호스텔·청소년이용시설), 도서관,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지와 건물
- □ 흡연실 설치기준
- ⊙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
- ⊙ 옥외별도 흡연실 설치가능,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

#### 2. 건물전체금연구역

- 정부청사(국회의 청사·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공 공기관의 청사·지방 공기업 청사)의 부지와 건물
- ⊙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의 건물. 대학교의 교사
- ⊙ 공항 · 여객부두 · 철도역 ·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· 승강장 ·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유상교통수단
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건축물(건축물에 입주한 영업장과 관련된 개별 법령 우선적용)
- ⊙ 300석 이상의 공연장,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, 관광숙박업소(객실 제외)
-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목욕탕, 청소년게임제공업소 · 일반 게임제공업소 ·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·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건물
- ⊙ 150제곱미터(45평) 이상의 휴게음식점 · 일반음식점 · 제과점영업소, 만화대여업소
- □ 흡연실 설치기준
- ⊙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 또는 옥외별도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.

## 3. 기타사항

- ⊙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내 전면금연
- ⊙ 식품접객업소의 연차별 금연 기준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
적용	150제곱미터	100제곱미터	0제곱미터

- ※ 단란주점 · 유흥주점은 제외
- 커피전문점 ('14.12.31일까지)
- ⊙ '14.1.1일자: PC방 전체금연구역
- 흡연시 10만원부과. 시설장 최고 500만원 이하('13.7.1일자)



### 포항시 금연환경조성구역

총계	도시공원	학교절대정화구역	버스정류장	주유소
789	123	248(189)	182	201

⊙ 흡연시 3만원부과('13.9.1일부터)